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의료직 채용공고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161명

구분	직렬	직급	채용 인원	일반 전형	구분채용		채용목표제 지역인재
					보훈 전형	장애인 전형	
계		-	161	141	13	7	-
의료직	간호사	6급	92	80①	8⑥	4	①~⑥ 전형의 경우 이전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적용
	물리치료사	6급	29	24②	3	2	
	작업치료사	6급	14	11③	2	1	
	방사선사	6급	9	9④	-	-	
	임상병리사	6급	9	9⑤	-	-	
	사회복지사	6급	2	2	-	-	
	임상심리사	6급	1	1	-	-	
	언어재활사	6급	1	1	-	-	
	치과위생사	6급	2	2	-	-	
	영양사	6급	2	2	-	-	

[일반전형] ① 간호사 선발인원(80명)의 30%인 24명, ② 물리치료사 선발인원(24명)의 30%인 8명, ③ 작업치료사 선발인원(11명)의 30%인 4명, ④ 방사선사 선발인원(9명)의 30%인 3명, ⑤ 임상병리사 선발인원(9명)의 30%인 3명, [보훈전형] ⑥ 간호사 선발인원(8명)의 30%인 3명은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총45명)

※ 사택 제공이 불가하므로 채용지역에서 근무가능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후 응시 권장

※ (채용직렬별 중복지원 불가) 입사지원서는 1인당 1회, 1개 분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채용직렬을 달리하여 중복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인사규정 제15조 제6항(채용)에 의거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근무기관에서 계속 근무(전보제한)

□ 근무기관 소재지

근무기관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1-11

□ 근로조건

- (시보임용) 관련 규정에 의거 3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
 - ※ 시보임용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가'로 평정된 경우 임용제한
 - ※ 시보기간은 「인사규정」 제19조,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2조에 의거 적용
- (보수수준)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경력기간 등에 따라 호봉산정)
 - ※ 신규직원 초임은 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 (근무형태) 1일 8시간 근무. 단, 병원 운영상황에 따라 3교대, 야간 및 휴일 근무 등 근무형태는 변경 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1-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붙임 1-2** 참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단,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한함(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 (연령요건)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60세 미만(정년)인 자)

○ (기타)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구분	응시분야	직렬	응시자격
의료직 6급	일반전형	간호사	간호사 면허 소지자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방사선사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영양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보훈전형	간호사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
	장애전형	간호사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 장애인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 장애인

3.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시자격 및 서류 심사) → 직업성격 검사 및 면접전형 → 서류검증 →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

□ 채용일정

전형절차	일정
채용공고	▪ '26. 7. 10.(금) ~ '26. 7. 20.(월)
응시원서 접수	▪ '26. 7. 13.(월) ~ '26. 7. 20.(월) 18:00:00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6. 7. 31.(금)
직업성격검사 및 증빙서류사전등록	▪ '26. 7. 31.(금) ~ '26. 8. 3.(월)
면접전형	▪ '26. 8. 10.(월) ~ '26. 8. 14.(금)
서류검증	▪ '26. 8. 15.(토) ~ '26. 8. 21.(금)
최종합격자 통보	▪ '26. 8. 27.(목)
임용후보 등록	▪ '26. 8. 27.(목) ~ '26. 9. 3.(목)
임용일(예정)	▪ '26. 9. 21.(월) 예정

4.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26. 7. 10.(금) ~ '26. 7. 20.(월)

□ 접수기간: '26. 7. 13.(월) ~ '26. 7. 20.(월) 18:00:00까지(휴일 포함, 24시간 상시접수)

○ 접수방법: 입사지원 사이트(<https://comwel2.saramin.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 (장애인전형) 중증장애인 중 희망할 경우 원서접수 시 작성한 예비연락처(가족 등)를 통해 채용공고, 전형별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음

5.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6. 7. 31.(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채용홈페이지 및 개인 SMS)

-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2.5배수~5배수(소수점 올림, 최하위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채용예정인원	1 ~ 5명	6 ~ 20명	21명 이상
배수	5	3	2.5

-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불합격 없이 응시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국가보훈부 미추천자의 동 전형 지원 시 응시자격 비해당으로 보아 서류전형 부적격 탈락 처리(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지 않은 취업지원대상자는 타 전형 응시가능)

- (정량평가)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 부여

- 학교성적, 전문자격, 전산자격, 공통자격 등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기소개서)

- 열린소통, 지원분야 직무이해, 전문성, 책임감(각 문항별 500자 이내 작성)
- 경력사항·경험사항과 관련한 회사명 등 직·간접적으로 인적사항을 유추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

직렬	서류전형(정량평가 100점 만점)		우대가점 (최대가점 10점)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 학교성적(30점)	○ 직무경력(30점) ○ 전산자격(20점) ○ 전문자격(20점)	○ 취업지원대상자 (10/5점) ○ 장애인, 산재, 의상자(5점) ○ 기타(5점), 경력가점(3점)
임상심리사	○ 직무경력(30점) ○ 전산자격(20점)	○ 전문자격(30점) ○ 공통자격(20점)	

※ 각 평가항목 내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하며 평가세부기준은 비공개하므로, 보유하고 있는 자격사항을 모두 기재 권고

○ (학교성적) 최종학교 성적기준으로 평가

- ※ (간호사) 「간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 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 ※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별표1]에 의거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 ※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에 의거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 ※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 (대학교)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편입, 학점은행제는 별도 적용)

- ①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 ③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 ④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⑥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직무경력)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이후,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 (전산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동일평가항목 내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전문자격)

구분	항목
간호사	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 분야, ②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발급한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③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한 보험심사관리사*

* 2023.10.01. 이전 주관처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구분	교육명	주관처	이수시간	비고
물리치료사	보바스(Bobath) 기본강좌	한국보바스협회	120시간 이상	-
	중추신경계발달치료(NDT)	대한재활의학회	120시간 이상	-
	통합중추신경계발달치료(INDT)	국제의과학 아카데미	120시간 이상	-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PNF, IPNF)	대한고유수용성 신경근촉진법학회	120시간 이상	-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OMPT)	대한정형도수 물리치료학회	120시간 이상	-
	칼텐본-에비언스(OMT)	칼텐본-에비언스 학회	120시간 이상	-
	대한기능도수물리치료(FMT)	대한기능도수 물리치료학회	120시간 이상	-
	할리윅(Halliwick), 바드라가즈(Bad Ragaz Ring Method) 등	국제수중치료협회	54시간 이상	-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20점까지 점수부여 가능

구분	교육명	주관처	수료여부	비고
작업치료사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	대한연하재활학회	수료	-
	연하재활전문가과정(성인기본과정): Adult-Basic Course	대한연하재활학회	수료	-
	운전재활전문가과정	한국운전재활학회	수료	30시간 이상
	연하장애 전문치료과정 기초	대한연하장애학회	수료	-
	전문인지재활치료사 기본(Basic)강좌	대한인지재활학회	수료	-
	치매와 인지장애의 인지재활 전문가 과정 (구. 인지재활전문가과정 part 1 & part 2)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수료	-
	AMPS 인정평가자 양성과정	대한지역사회 작업치료학회	수료	-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20점까지 점수부여 가능

구분	항 목
방사선사	■ 국내전문방사선사(전문방사선사시험원) - 자기공명영상(MRI)전문, 전산화단층촬영(CT)전문, 유방전문, 임상초음파전문(복부, 산부인과, 유방, 심장, 혈관, 근골격), 투시전문, 영상정보관리전문, 치료전문, 혈관 중재전문, 핵의학전문, 치과전문, 방사선의학물리사, 방사선안전관리전문, 방사선정도 관리전문 ■ 국제전문방사선사(전문방사선사시험원) - 자기공명영상(MRI)전문, 전산화단층촬영(CT)전문, 유방전문, 치료전문 등 ■ 진폐건강진단 정도관리 흉부촬영분야 교육 수료증 또는 특수건강진단 정도 관리 흉부촬영분야 교육 수료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상병리사	■ 전문임상병리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 혈액, 수혈, 화학, 면역, 미생물, 조직, 핵의학, 세포, 육안, 품질관리, 유전 ■ 진폐건강진단 폐기능검사 정도관리 교육 수료증 또는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 정도관리 교육 수료증(대한임상병리사협회) ※ 2023년 이전 발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재활상담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20점까지 점수부여 가능

구분	항목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1·2급), 전문상담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 (주관처)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심리학회 / 상담심리사(1·2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1·2급): 한국상담학회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치과위생사	보건교육사 1급·2급·3급, 간호조무사, 위생사
영양사	임상영양사, 위생사, 조리산업기사·조리기능사(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공통자격)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어진흥원), 한국실용글쓰기검정(한국어능력평가협회), 한국사능력검정(국사편찬위원회)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서류전형 공통자격 배점이 부여되는 임상심리사 직렬에 한함

□ 우대가점(사회형평적 요소 등)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5점	•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3점	•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5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사상자	5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상자 자녀
생활보호 대상자	5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보유 여성	5점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기타	5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자립준비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한함
경력가점	최대 3점	• 근로복지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기간제·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근무경력에 따라 최대 3점 차등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 부여

※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

6. 직업성격검사 및 증빙서류사전등록

□ 직업성격검사 : '26. 7. 31.(금) ~ '26. 8. 3.(월) 예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실시방법 : 면접전형 이전 개별 안내한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실시

□ 증빙서류등록 : '26. 7. 31.(금) ~ '26. 8. 3.(월) 예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실시방법 : 응시자격·서류전형 정량평가·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스캔본을 온라인 제출(실물서류는 추후 면접장에서 제출)

※ 기한내 증빙서류 미등록자는 면접전형 포기로 간주하여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하오니, 지원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제출된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및 입사지원서와의 일치여부만 확인하며 면접위원에게 일절 제공하지 않음

7. 면접전형

□ 면접전형 : '26. 8. 10.(월) ~ '26. 8. 14.(금) 예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기한내 온라인 증빙서류등록 및 직업성격 검사 실시 완료자에 한해 면접전형 기회 부여

○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 면접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지참

- 전자(모바일)신분증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한해 인정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 면접방식: 1인 개별 면접(예정)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 대인관계), 직무수행능력(도전정신, 전문성, 직업윤리, 자기개발) 등 평가
-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 서류검증 : '26. 8. 15.(토) ~ '26. 8. 21.(금) 예정

- 방법 : 온라인 사전등록한 증빙서류의 실물 일체를 면접 시 면접장에 지참하여 제출(응시자격·서류전형 정량평가·우대사항 증빙자료 일체)

□ 사회 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 부여

□ 증빙서류 제출(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직접 제출**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제출일 기준)로 한하여 인정.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

구분	제 출 서 류	발급 유효기간
공통 사항	① 해당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기한 없음
서류 전형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 학교성적을 수집하는 직렬에 한함(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기한 없음
	③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기한 없음

우대가점 (사회형평 적 요소 등 해당자에 한함)	*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교성적을 수집하는 직렬에 한함(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④ 병적증명서 1부(남성의 경우에 한하며, 세부항목 모두 필수 기재)	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①-1 (직무경력) 경력증명서(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경우)	기한 없음
	①-2 (직무경력) 해당직군 업무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전산자격) 정보화자격증 사본	기한 없음
	③ (전문자격) 채용계획상 반영된 해당직군 별도 추가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	기한 없음
	④ (공통자격) 공통자격증 사본 * 서류전형에서 공통자격 배점을 부여하는 임상심리사 직렬에 한함	기한 없음
	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지자체 발급)	
	④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⑤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사본	
	⑥ (경력보유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⑦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명의), 혼인관계증명서(부/모) * 부 또는 모 한국국적 취득 전: (부/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부 또는 모 한국국적 취득 후: 기본증명서(상세-이전국적표기), 국적취득사실증명서	
	⑧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⑨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⑩ (경력가점) 근로복지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기간제·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재직)증명서	기한 없음

7.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26. 8. 27.(목) 예정 ※ 채용홈페이지 및 개인 SMS로 개별 통보
-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내에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8.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기간 : '26. 8. 27.(목) ~ '26. 9. 3.(목) 예정
-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
-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 ※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임용일 : '26. 9. 21.(월) 예정
-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항목	주요내용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이전지역인재: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졸업예정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하며, 증빙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함 - 목표비율: 각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

	▪ 방법: 의료직 6급(일반전형)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및 의료직 6급(보훈전형) 간호사 직렬의 경우 채용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서류전형·면접전형의 선발예정비율(30%)에 미달하는 경우, 각 전형별 '합격최저점-5점'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과락자 제외) ※ 단, 최종선발예정인원이 5명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채용목표제는 채용목표비율 미달 시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하는 제도로 타 응시자의 불이익 없음
--	---

10.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 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수집,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는 모든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서류접수 마감시간(2026. 7. 20.(월) 18:00:00)까지 인터넷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하고 접수번호(수험번호) 부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는 최종 제출 후 지원서의 수정이 불가하며, 관련 사유로 응시원서를 이중 제출 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며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6. 7. 20.(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9호,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0조(신체검사) 3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응시자(탈락자 포함)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구비받아 응시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을 전형단계별 평정표에 기록하여 영구 보관

-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 부터 14일 이내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이메일(head9in@comwel.or.kr)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① 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피해자 구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

-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사업자 등록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형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전형과 관련된 장소, 세부일정, 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서류 등의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임용일로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용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채용진행기간 전화연결이 어려우므로 채용사이트의 Q&A(질문하기), 공지사항 및 FAQ게시판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사항: ☎ 02-6377-2524 / 02-6377-2525

[붙임 1-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6의4.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1-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3] 직무기술서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의료직(간호사) 】

직무 분야	간호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특화분류)
		06.보건/의료	02.의료	02.간호	01.임상간호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다양한 공공의료사업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사업 수행				
직무수행 내용	○ (간호수행) 환자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 기술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 (간호행정관리) 원활한 간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 물품, 시설 및 환경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능력 단위	○ (간호수행) 01. 의료·진료준비 02. 의료·진료 지원 03. 환자관리 04. 환자 교육 및 상담 05. 환자상담 06. 특수검사 ○ (간호행정관리) 01. 간호행정 02. 물품관리 03. 시설 및 환경관리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간호사 면허 소지자 ※ 「간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필요 지식	○ (간호수행) 의사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른 치료 지식, 약품의 종류 및 특성, 의료 장비별 특성 및 사용법, 질환 별 환자에 대한 매뉴얼, 응급상황에 대처 관련 지식, 보건 의약관계 법규, 간호 사정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 수술 및 시술종류와 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성인 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 간호학, 기본 간호학, 의학용어에 대한 기초지식 ○ (간호행정관리) 처방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의료장비별 특성 및 사용법, 환자 간호업무 우선순위, 약품의 종류 및 특성과 주의사항, 의학용어 관련 영어, 보험처리에 대한 지식(산재환자, 급여환자 등), 민원처리에 대한 해결방법				
필요 기술	○ (간호수행)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호흡·맥박·혈압·체온·혈당 측정능력, 투약능력(주사 요법, 항암요법, 수혈요법 등), 외국인 환자 관리 및 간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질환·수술·검사·진료에 대한 환자와 상담하는 능력, 환자 관리능력(투약, 신체검사, 검사 결과 알려주기 등), 각종 처치 및 처치 보조기술, 환자 의무기록 확인능력, 우선순위 결정능력, 환자에 대한 간호 사정 능력 ○ (간호행정관리) 의료장비 점검 및 관리능력, 업무보고서 작성능력, 약품·집기 비품 관리 능력				
직무수행 태도	○ (공통) 업무수행 지침 및 기준 준수,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재확인하는 꼼꼼함,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태도,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정직함, 환자에 대한 배려와 친절한 태도, 맡은 업무에 대한 끈기, 협력적인 태도, 칭찬과 질책을 담담이 받아들이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환자에 대한 관찰능력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물리치료사 】

직무 분야	물리치료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1.보건	01.의료기술지원	02.물리치료
주요사업	○ 산재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직무수행 내용	○ (물리치료) 만성통증 및 신체기능장애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물리적인 방법 즉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를 적용하는 업무 등				
능력 단위	○ (물리치료) 01. 해부학 02. 생리학 03. 운동치료 04. 전기치료 05. 광선치료 06. 수치료 07. 물리치료 검사 및 평가 08. 정형계 물리치료 09. 신경계 물리치료 10. 심폐피부계 물리치료 11. 보장구 의지 12. 스포츠 물리치료 13. 보건행정 14. 물리치료실 및 병원 인증 및 각종 평가관리 15. 통계 분석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필요 지식	○ (물리치료) 인체의 구조, 형태, 병리에 대한 지식, 운동치료의 개념과 운동중재의 원리 그리고 운동기법 적용에 따른 적응증, 금기증에 대한 지식, 물리적인자(전기, 광선, 물) 응용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각 치료별 적용부위, 특성 및 금기증과 적응증에 대한 지식,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 질환(근골격계, 신경계, 심혈관계, 스포츠 손상등)을 이해하고 질환별 치료법에 대한 지식, 보조기와 의지의 생체 역학을 고려하여 사용목적과 적응증의 이해, 절단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의지의 선택과 착용방법에 대한 이해, 보건통계 관련 지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감염관리 지침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지식, 의료관계법규, 보건통계 및 의학통계 기초지식 등				
필요 기술	○ (물리치료) 운동치료의 목적에 따른 기법 적용과 신체 부위에 따른 치료적 운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 여러 질환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들을 적용 기술, 여러 질환의 특성에 맞는 물리적 인자(전기, 광선, 물)치료적용 기술, 질환별(근골격계, 신경계, 심장호흡계)을 파악하고 평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환자기록지를 보고 평가와 치료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기술,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적 운동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 환자에게 알맞은 보조기와 의지를 선택하여 올바른 착용 방법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술, 신의료기술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능력, 의료장비 관리 능력, 보고서 작성 및 전산 업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정리 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 (물리치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산출하려는 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태도,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 태도, 환자에게 친절한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행정관리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유관부서 업무 이해 능력, 연구 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 태도, 연구 결과물을 명료하게 정리하려는 자세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www.kpta.co.kr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작업치료사 】

직무 분야	작업치료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1.보건	01.의료기술지원	03.작업치료
주요사업	○ 산재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직무수행 내용	○ (작업치료) 발달장애우들의 발달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감각· 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작업수행 분석 및 평가 업무,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치료 업무				
능력 단위	○ (작업치료) 01. 해부학 02. 생리학 03. 작업치료학 04. 작업치료 평가 05. 신경계 작업치료 06. 신체장애 작업치료 07. 정신과 작업치료 08. 아동 작업치료 09.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10. 수단적 일상 생활활동 11. 보조기 및 의지학 12. 인지재활 13. 삼킴장애재활 14. 환자 및 보호자 교육 15.작업치료실 및 병원 인증 및 각종 평가관리 16. 의료 장비 관리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필요 지식	○ (작업치료) 작업수행 분석 및 작업치료 평가와 결과 해석에 대한 지식, 클라이언트 중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지식, 작업수행 분석 및 평가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지식, 클라이언트 중심 중재와 전문적 작업치료를 위한 지식, 클라이언트 및 전문가와 효과적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에 관한 지식, 보건통계 관련 지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감염관리 지침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지식, 의료관계법규, 보건통계 및 의학통계 기초지식 등				
필요 기술	○ (작업치료) 작업치료 중 특히 감각통합기능 검사 및 평가 수행 능력, 작업치료 중재 및 서비스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능력(환자의 신체 기능 증진, 움직임 증진, 감각기능 향상 활동, 인지기능 향상 활동, 삼킴장애 훈련,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및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훈련, 감각통합치료 등), 보고서 작성 및 전산 업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정리 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 (작업치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산출하려는 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태도,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 태도, 환자에게 친절한 태도, 보호자에게 성실하게 교육하는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행정관리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유관부서 업무 이해 능력, 연구 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 태도, 연구 결과물을 명료하게 정리하려는 자세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www.kaot.org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방사선사 】

직무 분야	영상의학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1.보건	01.의료기술지원	04.방사선검사
주요사업	○ 생명을 존중하며,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상의 진료, 교육, 연구, 공공 보건의료 등 다양한 의료관련 사업수행				
직무수행 내용	○ (영상의학) 환자의 질병 및 장애를 진단하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사선 장비를 조작하여 방사선 촬영을 수행하는 업무 등				
능력 단위	○ (영상의학) 01. 환자 교육 및 관리 02. 방사선 검사 03. 피폭 관리 04. 정도 관리 05. 영상 관리 06. 장비관리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방사선사 자격 면허소지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필요 지식	○ (영상의학) 방사선 안전관리, 의료기사법 및 방사선 안전 관리법, 초음파 검사에 관한 지식, 촬영방법에 대한 지식,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지식, 조영제 부작용 관련 사항, 방사선방호의 기준 및 원칙, 방사선 병리학, 영상 해부학, 인체 해부학, 인체 생리학, 공중 보건학, 보건물리학 개론 지식, 방사선학 개론 지식, 방사선 검사 이론 지식, 디지털 영상처리 관련 지식, PACS 및 원격화상 시스템 관련 지식 등				
필요 기술	○ (영상의학) 방사선 안전 관리, 방사선 촬영코드 기록 및 관리 능력, 초음파 업무 능력, MRI 촬영능력, 촬영정보 수집 및 습득 능력, 방사선 일반촬영능력, 전산화단층촬영(CT) 능력, 방사선 관련 의료장비 관리 능력, 원서 및 최신 방사선학회의 지식 등의 영어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언어능력, 외국 환자들과의 회화 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 (영상의학) 기기 조작의 정확성, 안정사고 발생 예방을 우선시하는 태도,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자기개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태도, 환자에 대한 친절한 태도, 작업 협력 및 배려하는 자세, 관련부서 업무이해와 상호존중, 정확한 촬영을 위한 성실하고 꼼꼼한 태도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임상병리사 】

직무 분야	임상병리 (진단 검사)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2.의료	04.임상지원	02.임상병리
주요사업	○ 산재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직무수행 내용	○ (임상병리) 환자로부터 채취한 가검물이나 인체의 생리적 기능 변화를 검증된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하고 질병의 진단, 치료, 예후 판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의료기술 업무 등				
능력 단위	○ (임상병리) 01. 채혈관리 02. 정도관리 03. 임상병리(진단혈액, 임상화학, 미생물, 진단면역, 수혈의학, 유전자학, 생리기능학, 세포학, 진단병리학, 핵의학-체외)검사 04. 검체 및 결과 관리 05. 수혈관리 06.의료폐기물관리 07. 감염 및 안전관리 08. 의료장비관리 09. 검사정보 시스템 운용관리 10. 진단 시약 및 물품 관리 11. 검사실 및 병원 인증 및 각종 평가관리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필요 지식	○ (임상병리) 검사에 따른 검체 채취 관련 지식, 검체별 용기의 종류(항응고제 포함)에 따른 채혈 및 채취에 관한 지식, 검사 종류에 따른 검체량과 검체 보관 및 운송 조건에 관한 지식, 정도관리 목표에 부합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지식, 임상병리 검사에 적합한 검사 수행 절차와 검사결과 보고에 관한 지식, 임상병리학(혈액학, 임상화학, 노화학, 미생물, 수혈의학, 유전자학, 신경생리학, 진단병리학 등)에 대한 지식, 보건통계 관련 지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감염관리 지침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지식, 의료관계법규 등				
필요 기술	○ (임상병리) 검체 채취 및 검사 수행 능력(장비 운용, 현미경 검사, 검사 기술 등), 정도 관리 수행 및 평가 능력, 검체 관리 및 결과 관리와 해석 능력, 신의료기술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능력, 의료장비 관리 능력, 검사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능력, 보고서 작성 및 전산 업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직무수행 태도	○ (임상병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산출하려는 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태도,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 태도, 환자에게 친절한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행정관리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유관부서 업무 이해 능력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사회복지사 】

직무 분야	사회복지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7.사회복지 · 종교	01.사회복지	02. 사회복지서비스	01.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 02.일상생활기능지원 03.사회복지면담 04.사회복지사례관리
주요사업	○ 생명을 존중하며,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상의 진료, 교육, 연구, 공공보건의료 등 다양한 의료관련 사업수행				
직무수행 내용	○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들이 심리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질환의 치료, 회복 그리고 예방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의료진과의 협진함으로써 병원 내 치료는 물론 원활한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한다.				
능력 단위	○ (사회복지) 01. 의료사회복지업무(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등) 02. 기타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요 지식	○ (사회복지) 사회복지 윤리강령, 사회복지 및 의료사회복지제도 관련 지식 및 활용방법,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지식, 의료사회복지 상담 기술, 기초의학용어 숙지, 의료환경에 대한 이해, 의무기록/의료사회복지 기록 작성방법, 의료사회사업의 행정 실무, 팀접근, 기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이해				
필요 기술	○ (사회복지) 개인력, 가족 및 사회적 배경 조사, 정서적 심리사회적 문제의 사정, 평가 및 지지, 경제적 상황 평가 및 지역사회 연계, 퇴원 계획, 치료팀과의 협진, 집단 상담 및 교육, 의료사회복지관련 학회 및 협회 참여, 의료사회복지 기획 및 평가, 문서 수발, 의료사회복지기록 및 정리 보관, 기타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				
직무수행 태도	○ (사회복지) 업무수행 지침 및 표준 준수, 개인정보보호 준수,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 태도,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정직함, 대민 친절성 및 마찰해소 노력, 환자에 대한 공감적이며 친절함 태도, 맡은 업무에 대한 끈기, 직장 동료와의 업무협조 정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업무처리에 대한 정확성과 민첩성, 종합실무능력 등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임상심리사 】

직무 분야	임상 심리사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1.보건	01.의료기술지원	13.임상심리
주요사업	○ 산재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직무수행 내용	○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자문, 교육, 연구, 재활, 지도감독 등을 수행				
능력 단위	○ (임상심리) 01. 심리평가 02. 심리치료 03. 심리자문 04. 심리교육 05. 임상심리연구 06. 심리재활 07. 지도감독 08. 임상심리업무지원 09. 심리건강증진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필요 지식	○ 정신병리학, 정신약물학, 정신보건, 심리평가, 심리치료, 사회사업 치료, 정신건강문제, 사회복귀서비스 등 ○ 소아 청소년 및 성인종합심리평가, 주의력, 지능 평가 등 ○ 개인/집단 심리치료 실습, 정신 사회재활 실습 등				
필요 기술	○ 면담 상담 능력, 학습기능 분석 및 적용능력, 교육 기술, 보고서 작성 및 전산 업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산출하려는 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태도,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 태도, 환자에게 친절함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행정관리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유관부서 업무 이해 능력 등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 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언어재활사 】

직무 분야	언어재활사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2.의료	-	-
주요사업	○ 산재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직무수행 내용	○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 ○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				
능력 단위	○ 01. 신경언어장애 02. 언어발달장애 03. 유창성장애 04. 음성장애 05. 조음음운장애 06. 언어재활현장실무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언어재활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의거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필요 지식	○ 의사소통 진단 및 평가,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학 및 음운론, 언어장애와 심리학, 언어병리해부및생리학, 언어발달장애, 청각학,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개론 등				
필요 기술	○ 언어(의사소통)장애의 선별검사 또는 평가, 진단 및 중재(재활), 가정지도, 연구개발, 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직무수행 태도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산출하려는 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태도,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 태도, 환자에게 친절한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행정관리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유관부서 업무 이해 능력 등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 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치과위생사 】

직무 분야	치과위 생사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1.보건	01.의료기술지원	11.치과위생
주요사업	○ 창의적 진료·교육·연구를 통한 국민 보건 향상과 다정·공정·열정·배려로 고객중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직무수행 내용	○ (치위생) 치과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법적 범위내의 진료 및 진료보조 행위, 치과 환자의 예약 및 진료 일정 관리, 처치와 관련된 설명안내 업무, 치과 기구, 장비 및 물품 관리 및 검수 업무 등				
능력 단위	○ (치위생) 01. 치과위생사정 02. 치위생 진단 및 계획 03. 치위생수행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문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으므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에 대한 배점 부여				
필요 지식	○ (치위생) 치면세마론, 구강병리학, 구강내과학, 구강악안면외과학, 방사선 기초지식, 구내 외 필름의 종류 및 용도 관련 지식, 증감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이해, 방사선 영상의 특성 및 개념에 대한 이해, 치과 의료장비의 종류와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지식, 구내 촬영 종류 및 방법에 대한기초지식, 구외 촬영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 치위생 관련 약품의 종류·용도·특성에 대한 지식, 적출물 관리 지침 및 처리 시 유의 사항, 폐기물 관리 지침 및 처리 시 유의사항, 구강보건교육개념과 구성요소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 수면마취에 대한 지식, 소아환자 관련 지식 및 유의 사항, 보철학·임플란트·보존학·치주학에 대한 지식, 감염관리에 관한 지식 등				
필요 기술	○ (치위생) 위해 방사선에 대한 환자 보호 능력, 구외 촬영(파노라마 촬영, 두부규격 촬영 등) 능력, 치면세마 수행 능력, 약품용도에 따른 관리 능력, 소모품 및 준소모품 사용 및 관리 능력, 적출물 처리 및 폐기물 관리 능력, 구강보건 교육 실행 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 (공통) 업무수행 지침 및 기준 준수,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재확인하는 꼼꼼함,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태도,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정직함, 환자에 대한 배려와 친절한 태도, 맡은 업무에 대한 끈기, 협력적인 태도, 칭찬과 질책을 담담이 받아들이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환자에 대한 관찰 태도 등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영양사 】

직무 분야	임상 영양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1.보건	02.보건지원	06.영양관리
주요사업	○ 생명을 존중하며,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상의 진료, 교육, 연구, 공공 보건의료 등 다양한 의료관련 사업수행				
직무수행 내용	○ 환자에게 담당 주치의가 처방한 질병치료에 필요한 식사를 계획하여 제공하고 식사회진을 통한 치료식 영양관리를 실시하여 식사 순응도를 높인다. ○ 환자의 영양상태 평가, 영양진단, 영양치료계획과 수행,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 등의 임상영양 서비스 업무를 통해 환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켜 직·간접적인 치료효과를 증진시킨다.				
능력 단위	○ 01. 영양판정 02. 영양상담 및 교육 0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0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05. 치료식 설명 06. 교육자료 개발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관련 학문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으므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요 지식	○ 영양소의 소화, 흡수, 체내 기능 대사과정을 이해 ○ 질환의 발생원인과 기전, 관련 증상 및 진단검사 등에 대한 개념 이해 ○ 질환별 임상영양치료를 위한 영양관리 과정을 이해 ○ 영양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식행동 변화에 필요한 기초 이론(의사소통, 행동수정 방법) ○ 치료식 식단 작성의 이해				
필요 기술	○ 영양소 대사 이상과 질환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영양관리에 적용하는 능력 ○ 영양치료 대상자를 평가하고 중재할 수 있는 능력 ○ 식습관, 식사 일기 조사 및 분석 능력 ○ 질환별 임상 영양치료(영양판정,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능력 ○ 치료식 식단 작성 능력 및 상차림 점검 능력 ○ 교육자료 개발 능력				
직무수행 태도	○ 업무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는 성실한 태도,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완료하는 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태도, 상호존중하고 협업하는 태도, 환자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적용 태도, 위생 및 감염관리에 대한 올바른 수행 태도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붙임 4] 채용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성명		채용분야	
이메일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 신청시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고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만 기재 바랍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 질의사항,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